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8 선고 2015가합564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D

5. E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5. 8.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225,332원과 그 중 715,224,093원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2014. 9.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 접수 제504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5·6·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14. 11. 27.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1. 27. 접수 제68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8 내지 3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4. 12.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25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원고의 대위변제 등에 따른 구상범위

가. 원고의 대위변제

한편 피고 A이 2014. 12. 19. 원리금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5.

3. 5. 피고 A을 대위해 기업은행에 718,810,763원(제1약정 대위변제금 459,528,608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259,282,155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나. 일부 회수와 확정손해금의 발생

원고는 대위변제 후 제1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으로부터 3,586,670원을 회수해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때부터 제1약정의 대위변제잔금은 455,941,938원(= 대위변제금 459,528,608원 - 회수금 3,586,670원)이 되었으며, 회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라 확정손해금 1,2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구상범위

따라서 원고의 구상 총액은 715,225,332원(= 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455,941,938원 + 제1약정 확정손해금 1,239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259,282,155원)입니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225,332원과 그 중 제1약정 대위변제잔금 및 제2약정 대위변제금의 합계 715,224,09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및 B은 각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원고의 피고 A 및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시기(대위변제일 2015. 3. 5.)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2014. 9. 1.) 및 별지 목록 제5·6·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합니다) 사이의 매매예약(2014. 11. 27.) 및 별지 목록 제8 내지 3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2014. 12. 15.)이 각 체결된 이후이지만, 피고 A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출부진으로 인한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2014. 12. 19.)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각 체결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구상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 5317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 (1).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 접수 제5047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2).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5·6·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7.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지냈던 피고 D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1. 27. 접수 제6868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3).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8 내지 3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5. 피고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2587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이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피고 B이 피고 D와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및 피고 B이 피고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만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피고 A 및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각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의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수익자인 피고 C, D, E의 악의 역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 소결

-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2014. 9.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 접수 제504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 (2). 별지 목록 제5·6·7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1. 27. 접수 제68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 (3). 별지 목록 제8 내지 3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4.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25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재판장판사김성엽

판사이창원

판사박지원

별지